

토지사용 통지서

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	성명	생년월일			
	주소 (전화번호:)				
토지 소재지		지번	지목	면적	비고
				m ²	
사용기간	부터 까지(일간)				
사용목적					
자재채취 수량 및 사용면적	구분	종류	수량 및 면적		비고

「사방사업법」 제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사행위 등을 위한 토지사용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
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

직인

안내사항

떼·토석 등 자재채취 및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한 토지는 원상회복이 되도록 필요한 작업을 합니다.